

제24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안전보안관 운영
조례안」

檢 討 報 告 書

【유승용 의원 대표발의】



2023. 2. 20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
專 門 委 員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」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106호로 2023년 2월 9일 유승용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보안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- 나. 안전보안관 위촉, 교육 및 임기(안 제3조 ~ 제4조)
- 다. 대표단 구성, 활동 및 활동지원 등에 관한 사항
(안 제5조 ~ 제7조)
- 라. 관리 및 해촉, 포창(안 제8조 ~ 제9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의4제3항
- 나. 예산조치: 필요 시 반영
- 다. 입법예고(2023.2.9. ~ 2023.2.13.)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조례안은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안전보안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발의된 안전으로

○ 주요 내용으로

- 조례명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」 이고 10개의 본칙 조문과 2개의 부칙 조문으로 구성되었음.
-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고,
- 안 제3조에서는 재난·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또는 전문가이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등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4조에서는 안전보안관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였고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3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 그 임무와 역할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- 안 제5조에서는 대표단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,
- 안 제6조에서는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와 안전위험 요인 신고,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에 참여,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, 안전사고 발생 시 주민대피 유도 및 비상 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 전달 등 안전보안관의 활동에 대해

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,

-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안전보안관의 활동 지원과 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
○ 검토 결과

- 생활 속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시민이 동참하는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‘舊우리동네 안전감시단(’15.7. ~ ’18.6.)’을 2018.10.부터 ‘안전보안관’으로 개편하여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,
- 최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안전사고와 화재 등으로 많은 인명·재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 전반으로 안전문화 확산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.
- 현재 우리 구는 자치구 개별 조례 없이 행정안전부의 계획에 따라 서울시가 운영하는 “서울시 안전보안관” 제도를 기반으로 영등포구 안전보안관을 운영하고 있음.
- 본 조례안은 기 시행중인 안전보안관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·정착화하여 생활 속 안전위험 요인을 발굴하는 등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여 지역 전반에 걸쳐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으로,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시의적절하며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참고 자료

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제66조의4(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
1.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(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)
2.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
3.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·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·보급
4.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
5.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·활용 및 공개

6.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

6의2.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

7.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
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·조정 업무를 관장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 체험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·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